



Vol. 3

2024.03.13.

Customs Trade News

HANJOO CERTIFIED CUSTOMS AGENCY



HANJOO

T. 02-2017-2296

F. 02-545-5392

W. <http://www.hjcustoms.co.kr>

통관사업1본부 안만복 본부장 mbahn@hjcustoms.co.kr

통관사업2본부 박주경 본부장 jpark@hjcustoms.co.kr

통관사업3본부 장진명 본부장 jmjang@hjcustoms.co.kr

통관사업2본부 최지수 전임 jschoi@hjcustoms.co.kr

CONTENTS

I. 법령 개정사항

II. 입안 예고

III. 조세심판사례

IV. 관세 및 FTA관련 동향

I. 법령 개정사항

1.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 개정

(1) 개정 이유

현지실사 대상인 해외제조업소 등의 등록을 철회 후 등록을 신청 시, 현지실사 등 검토를 거쳐 등록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현지실사를 거부 등으로 수입이 중단된 수입식품 등에 대하여 해당 해외제조업소에 대한 현지실사 등의 결과에 따라 수입중단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등으로 등록 또는 변경 등록된 해외제조업소 등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 전에는 등록 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구분	내용
해외제조업소 등의 등록철회 후 재신청 (제5조, 제12조)	현지실사 대상인 해외제조업소 및 해외작업장의 등록을 철회한 후 다시 등록을 신청한 경우 현지실사 등 검토를 거쳐 등록 여부를 결정함.
해외제조업소 등의 등록 취소 등 (제5조의2, 제13조)	해외제조업소 및 해외작업장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변경 등록된 경우 식약처장이 등록 취소하도록 함.
수입중단 수입식품 수입 중단 해제 (제6조, 제13조)	현지실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여 수입이 중단된 수입식품 등에 대해 해당 해외제조업소 및 해외작업장에 대한 현지실사 등의 결과에 따라 수입중단을 해제함.

(3) 시행일

'24.02.17.

I. 법령 개정사항

2.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

(1) 개정 이유

수입신고가 필요하지 않은 수입식품등을 여행자가 휴대한 것 또는 자가소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 수입식품등 등으로 정하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의 개정 내용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등의 영업등록증의 훼손·분실, 위변조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영업등록증을 전자문서로 발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구분	내용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의 개정에 따른 개정	수입중단 수입식품 등을 해당 해외제조업소에 대한 현지 실사 등의 결과에 따라 수입중단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 개정되어, '등록갱신'을 '등록 유효기간의 연장'으로 변경
자가소비용 수입식품 등 지정 (제27조의2)	수입신고가 필요하지 않은 수입식품등을 여행자가 휴대한 것 또는 국제우편물·국제특송화물 등으로서 자가소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 수입식품등 등으로 규정함.
수입식품 영업등록증의 전자문서화 (제16조)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등의 영업등록증의 훼손·분실, 위변조 등을 예방 목적으로 영업등록증을 전자문서로 발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전자문서로 발급받은 영업등록증의 경우에는 제출 의무를 면제함.

(3) 시행일

'24.02.17.

I. 법령 개정사항

3.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1) 개정 이유

「화장품법」 제8조에 따라 제외국 현황 등을 포함한 위해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위해 우려 성분을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목록에 추가하여 화장품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구분	내용
화장품 사용금지 원료 추가 (별표 1)	1,2,4-트리하이드록시벤젠(CAS No. 533-73-3)을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에 추가

(3) 시행일

'24.02.07.

I. 법령 개정사항**4.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1) 개정 이유**

유치대상 물품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세법령에 맞춰 재구성하고,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 사항인 향수 면세범위의 상향을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구분	내용
유치대상 물품에 대한 전문 재구성 (제17조)	유치대상은 관세법 및 동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관세법령 변경 시 즉시 수용 가능하도록 동 규정 내용을 고시로 인용하고자 함. - (제1호) 법 제20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물품 - (제2호) 영 제219조제1항에 해당하는 물품
향수 면세범위 상향 (제19조)	관세법 시행규칙 제48조 개정에 따라 향수 면세범위를 60밀리리터(ml)에서 100밀리리터(ml)로 상향

(3) 시행일

'24.02.15.

I. 법령 개정사항

5.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1) 개정 이유

냉장식품의 매장 직반입 등 적극행정위원회 의결 사항 반영하고, 보세판매장 물류 환경 개선을 통한 업무 효율성 및 물류 흐름 원활화 제고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구분	내용
적극행정위원회 의결 사항 반영 (제6조, 제23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냉장 보관이 필요한 내국물품에 대해 매장 직반입 허용 * (원칙) 보관창고에 판매물품 반입 후 매장 반입 2)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23조 「재고조사」와 「특허보세구역 운영에 관한 고시」 제20조 및 제22조 「보세구역 운영상황 보고 및 점검」 내용 중 중복되는 부분은 「보세구역 운영상황 보고 및 점검」 사항에서 제외
보세판매장 전자적 처리 방법 도입 (제14조, 제19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보세운송 물품 인수인계 시 전자적 방법(QR코드 등)의 이용 허용 2) 인도자의 미인도 물품목록 제출 의무를 전산 확인 등록 방식으로 변경
보세판매장 운영 절차 개선 (제9조, 제19조, 제 30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입·출국장 면세점의 전자상거래 판매 허용에 따른 판매 신고 절차 마련 2) 환불된 물품에 대해 통합물류창고로 직반입 허용 * (기존) 보세판매장 보관창고에만 직반입 가능 3) 서류 출력이 필요한 필증의 보관 의무를 삭제하여, 서류를 출력 없이 자료보관체에 보관할 수 있도록 개선

(3) 시행일

'24.02.21.

I. 법령 개정사항

6. 「관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

(1) 개정 이유

덤핑방지조치 대상 물품에 우회덤핑에 대한 덤프방지관세의 부과 근거를 마련하고, 「관세법」 개정에 맞추어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기획재정부장관이 「관세법」 해석과 관련된 질의를 직접 회신할 수 있는 사유를 추가하고, 물품의 통관을 보류할 수 있는 사유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구분	내용
기획재정부장관의 「관세법」 해석 질의 직접 회신 (제1조의3)	기획재정부장관은 「관세법」 해석 질의에 대해 입법 취지에 따른 해석이 필요한 경우로서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에게 이송하지 않고 직접 회신할 수 있도록 함.
우회덤핑 요건 구체화 및 우회덤핑 조사 절차 등 마련 (제71조의2 ~제71조의11)	1) 우회덤핑의 요건을 덤프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을 공급국에서 그 물품의 본질적 특성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로 물리적 특성 등을 변경하여 덤프방지관세를 회피하는 행위로 구체화 2) 우회덤핑 여부 조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덤프방지관세 부과 신청서에 조사대상물품의 수입사실과 우회덤핑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및 이유를 첨부하게 함. 3) 우회덤핑 조사를 개시한 무역위원회는 조사개시 결정 이 관보 게재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우회덤핑 여부를 조사하여 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납세자 본인의 과세정보 전송 절차 등 마련 (제141조의 13)	1) 납세자는 본인의 과세정보의 전송을 요구 시 과세정보의 보관기간을 특정하여 요구하도록 함. 2) 납세자 본인의 과세정보를 이용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자 또는 과세정보의 전송 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과세정보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하도록 함.
물품의 통관 보류 사유 추가 (제244조)	세관장은 관계 법령에 따른 일시적 통관 제한·금지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일시적 통관 제한·금지 요청이 있어 세관장이 그 해당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통관을 보류할 수 있도록 함.

I . 법령 개정사항

구분	내용
물품검사 관련 손실 보상 대상 추가 등 (제251조의2)	세관공무원의 물품검사로 물품을 포장한 용기 또는 운반 · 운송하는 수단에 손실이 발생하여 수리할 수 없는 경우 구매가격 및 손실을 입은 자가 청구하는 금액을 고려하여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금액을 보상하도록 함.
마약류 관련 정보 요구 대상 기관 및 범위 (제263조의3)	관세청장은 검찰총장에게 마약류 밀수나 유통 범죄와 관련된 최근 10년간 수형인명부에 기재된 국민 및 외국인의 성명 · 생년월일, 범죄사실 및 처벌내용 등 마약류 관련 정보제출 요구 대상 기관의 장 및 정보의 범위를 정함.

(3) 시행일

'24.02.29

I. 법령 개정사항

7.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일부 개정

(1) 개정 이유

2022년 관세품목분류체계(HS)가 개정됨에 따라, 전기식 시각 신호용 기기 등
*양허 관세가 적용되는 일부 물품의 품명과 세율을 HS 2022에 맞추어 세분화
하려는 것임.

*양허관세: 기본 세율(대체로 8%)보다 낮은 경우에 한해, 세율 적용 우선순위에 따라 양허
관세(C)를 우선 적용.

(2) 주요 내용

구분	내용
공인된 임상시험에 사용하는 플라세보와 맹검(또는 이중 맹검) 임상시험 키트 (일정한 투여양인 것)	<p>1) '임상시험에서 사용되는 Placebo와 맹검 등 임상시험 키트'는 HSK 제3006.93-0000호에 분류되며, 양허관세(C) 6.5%의 세율 적용</p> <p>2) 구성 성분에 따라 적용 세율이 세분화되어, '각종 화학 물질로 만든 것'인 경우만 양허관세(C4) 6.5% 적용하며, 그 외의 성분으로 구성된 것은 기본 세율 8% 적용</p>
전기식 시각 신호기기용 평판디스플레이 모듈 (신호용기기용 한정)	<p>1) HSK 제 8524.11-5000호에 분류되는 '전기식 시각 신호용 기기에만 전용되는 평판디스플레이 모듈'은 기본 세율 8% 적용</p> <p>2) LCD(액정디바이스)가 결합된 형태의 표시기에 전용품인 평판디스플레이 모듈은 양허관세 0%를 적용 가능</p>

(3) 시행일

'24.02.29.

I. 법령 개정사항

8.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

(1) 개정 이유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회원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하는 협정관세율 중 코코넛 주스의 협정관세율을 40%에서 0%로 변경하려는 것임.

* 보정이자: 「관세법」에 따른 보정 신청을 받아 부족세액을 징수하는 경우, 부족세액에 더하여 징수하는 이자

(2) 주요 내용

구분	내용
협정관세 적용물품 의 보정이자 면제 근거 마련 (제46조의2)	수입자가 세관장으로부터 원산지증빙서류의 오류를 통보 받은 경우로, 원산지 조사의 통지를 받기 전 세액보정 신청하는 경우 수입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때에는 보정이자 를 징수하지 않도록 규정
코코넛 주스 협정관세율 인하 (별표4)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회원국(ASEAN)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하는 협정관세율 중 코코넛 주스(HSK 제 2009.89-1030호)의 협정관세율을 '40퍼센트'에서 '0퍼센트'로 변경

(3) 시행일

'24.02.29.

I. 법령 개정사항

9.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 일부 개정

(1) 개정 이유

「관세법」에 따라 UN 총회의 결의에 따른 최빈개발도상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은 다른 국가보다 우대하여 기본세율보다 낮은 세율의 특혜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바, UN 총회의 결의에 따라 최빈개발도상국 제외가 예정된 국가에 특혜관세의 적용시한을 설정하고, 최빈개발도상국 대우가 연장된 국가에 특혜관세의 적용시한을 삭제하는 한편, 특혜관세의 적용시한이 도래한 국가를 특혜관세 적용 대상 국가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구분	내용
네팔, 라오스 및 방글라데시 특혜관 세 적용 시한 설정 (별표1)	UN총회의 결의에 따라 최빈개발도상국 제외가 예정된 네 팔, 라오스 및 방글라데시에 대한 특혜관세는 2026년 11월 23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
양골라 특혜관세 적 용시한 삭제 (별표1)	UN총회의 결의에 따라 최빈개발도상국 대우가 연장된 양 골라에 대해 설정된 특혜관세 적용시한 삭제
특혜관세 적용대상 국가에서 부탄 제외	최빈개발도상국 제외 및 특혜관세의 적용시한이 도래한 부탄을 특혜관세 적용대상 국가에서 제외

(3) 시행일

'24.02.29.

I. 법령 개정사항

10. 「수입식물 등의 검역요령」 일부 개정

(1) 개정 이유

「수입식물 등의 검역요령」에 재검토 기한의 도래와 전용선박으로 수입되는 곡류 등의 검역방법 개선 등 그간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구분	내용
혼적 개념 명확화 (제2조)	전용선박으로 식물검역대상물품과 비대상물품이 혼적된 경우라도 화물창별 격벽으로 별도로 적재되었다면, 전용선박으로 인정 가능토록 기존 혼적의 개념을 명확히 하여 개선
식물검역대상물품의 운송 중 안전관리기준 조정 (제6조)	식물검역대상물품의 운송 중 안전관리기준 중 병해충 비산방지를 위한 기준 약제 '클로르피리포스 수화제(안전성 평가 부적합)'가 등록 취소되어 메타플루미존 유제, 티아클로프리드 액상수화제를 신규 추가
흙으로 보지 아니하는 물질 추가 (별표1)	위험평가를 거쳐 흙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물질로 평가된 사례에서 채취한 흙, 야구장 토양물질 등을 반영
전용선박으로 수입되는 곡류 등의 검역방법 개선 (별표2)	전용선박으로 수입되는 곡류 등의 검역방법에서 병해충 위험도 검토 및 개선 검토결과를 반영하고, 검역관의 안전을 위한 조치 사항 추가
전용선박으로 수입되는 목재류, 죽재류의 검역방법 개선 (별표3)	전용선박으로 수입되는 목재류, 죽재류의 검역 시 선상검역을 실시하는 경우 검역관의 안전 사고 우려 등을 고려하여 일부 하역 후 검역을 실시할 수 있도록 개선

(3) 시행일

'24.02.27.

II. 입안예고

1.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입안 계획

(1) 입안 이유

「관세법」 등 법령 상 개정 사항 반영 및 용어 변경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 보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구분	내용
용어의 정의 (제2조, 제18조 및 별표2)	1) '종합심사'를 '갱신심사'로 용어를 변경하여 강제적 방법인 관세조사(기업심사)와 혼동 여지 제거 2) 「관세법」, 「관세법 시행령」 상 용어와 통일
수탁기관의 업무 명확화 (제7조의2, 제8조)	위탁 업무를 「관세법」 상 업무 위탁 범위에 부합하도록 '서류심사 지원업무' 및 '예비심사 지원업무'로 명확화
공인 취소사유 등 반영 (제25조의2)	1) 공인 취소사유를 강제규정에서 임의규정으로 변경 2) 보세사 명의대여죄로 처벌받는 경우 취소 사유 추가 3) 관세사 부문 공인 취소사유(사무소 설치개수 위반) 일부 제외
변동 신고 시 기업 동일성 판단 기준 마련 (제17조)	변동 신고 시 AEO 공인 지위 승계 여부에 대한 예측 가능성 제공하기 위해 조직 구성, 사업의 실질 등 사업의 동일성 판단기준 마련
공인기준 개정 (별표1)	1) 중소수출기업의 재무건정성 심사기준 부담 완화 제출 서류 대폭 축소: 약 500종 → 약 350종 2) 국제 공인기준 변동 사항 국내 수용 목적 개정 강제노동 금지 및 테러자금 조달 방지 노력, 사이버 위기 대응하기 위한 정보기술 관리 기준 보완
AEO 혜택 규정 개선 (별표2)	1) 상대국 수출자의 AEO여부에 따라 수입검사 시 검사 축소율 확대(MRA 체결 상대국 한정, 무작위선별 제외) 2) 타부처 협의 등에 따른 신규 혜택 등 현행화 글로벌 쇼핑몰 입점판매사업 가점 부여(중소기업벤처부 주관), 환특법에 따른 분할증명서 자동 발급

(3) 시행일

'24년 3월 중

II. 입안예고

2.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간접심사 운영에 관한 훈령」 입안 계획

(1) 입안 이유

심사체계 개편, 「관세법」 등 법령 개정 사항 반영 및 용어 변경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구분	내용
간접심사 주체 추가 (제5조)	수출입 기업에 대한 간접심사를 본부세관장도 수행 가능하도록 하여, 심사기간 장기화 대응
본부세관장의 심사 결과 직접 통 지 근거 마련 (제33조)	현재 통관적법성 심사 결과를 관세평가분류장이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본부세관장이 통관적법성 심사 결과를 업체에 직접 통지할 수 있도록 개선
통관적법성 심사의 중간·결과보고 절차 마련 (제34조)	타부서 업무협의 필요·타기관 통보, 기타 관세행정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등 본청 중간·결과보고가 필요한 중요사항에 대한 세부 규정 마련
공인심사 중단 규정 마련 (제11조의2)	신청업체가 공인 신청을 취소한 경우 관세청장에게 보고 후 심사 중단 및 제출 서류 반환
관세조사로 전환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제34조)	명백한 탈세 정황 발견 또는 구체적인 탈세 제보를 입수한 경우는 간접심사를 관세조사로 전환할 수 있도록 규정
수탁기관의 업무 명확화	위탁 업무를 「관세법」 상 업무 위탁 범위에 부합하도록 '서류심사 지원업무' 및 '예비심사 지원업무'로 명확화
용어의 정비 (제2조, 제18조 및 별표2)	1) '종합심사'를 '간접심사'로 용어를 변경하여 강제적 방법의 관세조사(기업심사)와 혼동 여지 제거 2) 통관적법성 '검증' 대신 '심사'로 통일

(3) 시행일

'24년 3월 중

II. 입안예고

3.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입안 계획

(1) 입안 이유

금지 병해충의 고시방법, 검역증명서 첨부 면제 등 현행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구분	내용
별표1 고시 주체 변경 (제4조, 제12조)	금지식물, 금지지역 및 금지병해충 변경 필요 시 신속한 반영을 위해 고시 주체를 검역본부장으로 변경
검역증명서 첨부·전송 면제 사유 추가 (제10조)	전쟁, 내란, 천재지변 등 수출국의 위기상황 발생시 검역 증명서 첨부를 면제하도록 근거 규정 신설
별지서식 내용 현행화	격리재배지 이동기간 변경, 열처리업체 지위승계 제출서류 등 관련규정 변경에 따른 현행화

(3) 시행일

'24년 4월 중

II. 입안예고

4.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입안 계획

(1) 입안 이유

고유가 지속으로 인한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석유가스 중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탄력세율 인하 조치 기한을 2024년 2월 29일까지에서 2024년 4월 30일까지로 연장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구분	내용
부탄의 탄력세율 인하조치 연장	개별소비세의 한시적인 탄력세율 인하 조치기한을 '2024년 2월 29일까지'에서 '2024년 4월 30일까지'로 2개월 연장

(3) 시행일

'24. 03. 01

II. 입안예고

5.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입안 계획

(1) 입안 이유

고유가 지속으로 인한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및 경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의 탄력 세율 인하 조치 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구분	내용
휘발유 ·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탄력세율 인하 연장	2024년 3월 1일부터 2024년 4월 30일까지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탄력세율을 리터당 396.7원으로, 경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탄력세율을 리터당 238원으로 적용

(3) 시행일

'24.03.01

II. 입안예고

6. 「일본·중국 및 핀란드산 도공(Coated) 인쇄용지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입안 계획

(1) 입안 이유

「일본·중국 및 핀란드산 도공(Coated) 인쇄용지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의 유효기간이 2023년 7월 21일 만료되어 재심사 결과 덤핑수입과 이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될 우려가 있어 해당 물품에 대해 향후 5년간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구분	내용
덤핑방지관세 부과 물품	HSK 번호 제4810.13.1000호, 제4810.14.0000호, 제4810.19.1000호, 제4810.19.9000호, 제4810.22.0000호, 제4810.29.0000호에 해당하는 것 중 1제곱미터당 중량이 55그램 초과 110그램 이하인 제품으로 함.
적용 기간	동 규칙을 공포한 날부터 5년간
덤핑방지관세율	공급자별로 8.22%~16.23%

(3) 시행일

'24년 3월 중

II. 입안예고

7. 「관세조사 시 과세자료 확보에 관한 훈령」 입안 계획

(1) 입안 이유

관세조사 시 자료제출 비협조에 대한 대응 강화로 자료확보 실효성을 높이고, 자료요구 절차 보완으로 공정·정확한 관세조사 수행하기 위해 제정함.

(2) 주요 내용

구분	내용
훈령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제1조, 제2조)	훈령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제정
관세조사 시 과세자료 제출 요구 및 확인 절차 (제3조~제6조)	1) 과세자료 제출요구의 기본원칙 제정 2) 관세조사 단계별 과세자료 요구 및 확인 절차 제정
과세자료 등 제출 비협조자에 대한 대응조치 (제7조~제18조)	1) 제출 비협조자 정의 및 대응 원칙 제정 2) 관세조사 중지·연장, 과태료 부과, P/L 신고배제, 검사를 상향 등의 대응조치 제정 3) 월별납부 배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미발급 등의 대응 조치 제정 4) 거래가격 부인, 조사의뢰·통고처분, 비정기 관세조사 선정 등 대응조치 제정
대응조치 등에 관한 납세자 보호 방안 (제19조)	관세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납세자의 권리보호 방안 제정

(3) 시행일

'24년 3월 중

II. 입안예고

8.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입안 계획

(1) 입안 이유

관세 등을 환급받을 수 있는 무상수출의 해당 여부를 확인하는 자에 주무부장관을 추가하고, 중소기업 수출실적만으로 일정 금액을 환급하는 간이정액환급제도의 적용요건 중 환급실적 한도를 6억원에서 8억원으로 상향하면서, 환급실적을 산출할 때 원상태환급을 제외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구분	내용
무상수출 여부 확인 주체 추가 (제2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을 환급 받을 수 있는 무상수출의 해당 여부를 확인하는 자에 주무부장관을 추가
간이정액환급제도 적용요건 변경 (제12조)	1) 중소기업 수출실적만으로 일정 금액을 환급하는 간이정액환급제도의 적용요건 중 환급실적 한도를 6억원에서 8억원으로 상향 2) 간이정액환급제도의 적용요건 중 환급실적 산출 시 원상태환급을 제외

(3) 시행일

'24년 3월 중

II. 입안예고

9. 「관세법 시행규칙」 입안 계획

(1) 입안 이유

우회덤핑방지제도 도입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경미한 변경행위' 판단시 고려해야 하는 요소를 명확히 규정하고, 면세점 업계 지원을 위해 보세판매장 특허 수수료의 감경 기간을 연장하며, 수출입물품 검사 수수료를 폐지하는 등 현행 제도를 일부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구분	내용
관세환급가산금 등 계산 이자율 조정 (제9조의3)	예금금리 수준을 감안하여 관세 등을 환급하거나 과다환급된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관세환급금 또는 과다환급액에 더하는 가산금을 계산할 때 적용되는 이자율을 연 1천분의 29에서 연 1천분의 35로 조정
우회덤핑 행위 중 '경미한 변경' 여부 판단 근거 마련 (제20조의2 및 제20조의3)	1) 우회덤핑의 행위 유형을 '경미한 변경'으로 구체화하여 '경미한 변경행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고려요소를 명확히 규정 2) 조사신청 철회, 비밀취급 자료 등 원심 덤픽조사의 절차 규정 중 우회덤핑 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준용
'23년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 감경 (제68조의2)	법 제176조의2에 따른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 감경 대상 매출액에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매출액을 추가
보세운송 특례절차 신설 (제73조의3)	법 제220조의2의 위임(국제항 내 국제무역선에 의한 보세운송)에 보세운송의 주체와 대상물품의 세부사항 규정
수출입물품 검사 수수료 폐지 (제78조)	세관 직원이 세관검사장이 아닌 장소에서 물품을 검사하는 경우 수수료 폐지
과세자료 제출서식 추가 (제79조의4 및 별지 제68~75호 서식)	「관세법 시행령」 별표3 개정으로 과세자료제출 대상 기관 및 대상 자료가 추가됨에 따라, 과세자료의 제출서식을 구체적으로 규정

II. 입안예고

구분	내용
관세정보 전송 요구 수수료 규정 (제88조)	관세법(법 제116조의6)에 따른 관세정보 전송 요구자가 납부해야 할 수수료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
전자문서중계사업자 의 지정취소 및 업 무정지 기준 마련 (제89조)	관세법(법 제327조의3)에 따른 전자문서중계사업자의 의무 위반에 대한 사업자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의 세부기준을 규정
관세 면제대상 희귀병치료제 추가 (별표2)	아미팜프리딘 등 람베르트-이튼 증후군 환자의 치료에 사용할 치료제를 관세 면제 대상에 추가

(3) 시행일

'24년 3월 중

II. 입안예고**10.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입안 계획****(1) 입안 이유**

원산지증명서 재발급 및 정정발급을 신청할 때 제출서류 중 신청사유서를 삭제하고, 협정상 연결원산지증명의 정의 및 연결산지증명서 발급 신청 시 제출서류를 시행규칙에 명확히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미국산 구리암모늄 원사를 사용하여 제조한 직물에 대한 원산지기준을 완화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구분	내용
원산지증명서 재발급 및 정정발급 신청 간소화 (제10조)	서류제출 부담 완화 및 원산지증명 편의성 제고 목적으로 원산지증명서 재발급 및 정정발급 시 제출서류 중 신청사유서 삭제 및 원산지증명서의 원본 없이 발급 가능하도록 간소화
연결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 제출서류 명확화 등 (제2조 및 제10조)	협정상 연결원산지증명의 정의 및 이에 의한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 시 제출서류를 시행규칙에 명확히 규정
한-미 FTA의 섬유의 원산지 기준 완화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4-가의 특정 섬유 및 의류의 원산지 규정 개정에 관한 교환서한」의 합의로 구리암모늄 원사를 사용하여 제조한 직물에 대한 원산지기준을 완화

(3) 시행일

'24년 3월 중

II. 입안예고

11. 「월별납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입안 계획

(1) 입안 이유

과세자료 등 제출 비협조자에 대한 월별납부 승인 요건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를 일부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구분	내용
월별납부 승인 요건 추가 (제3조)	관세조사 시 과세자료 확보에 관한 훈령 제7조에 따라 과세자료 등 제출 등의 납세협력의무 미이행 사실이 없는 자를 월별납부 승인 요건으로 추가

(3) 시행일

'24년 4월 중

III. 조세심판사례

1. 청구법인이 쟁점수출자로부터 수리용 보드를 수입하면서, 신품과 재생품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수입가격을 신고하였다가, 과세관청의 심사를 거쳐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납부한 것이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사유인 ‘수입자의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확인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주요내용

- 가. 청구법인은 반도체 테스트 장비에 대한 설치 및 유지보수업을 영위하며, 일본 소재 수출자 등으로부터 보드를 수입하면서 국내 반도체 제조회사로부터 회수한 불량 보드를 수출자 등에 무상으로 수출함.
- 나. 인천세관장은 청구법인의 수입물품을 대상으로 관세조사를 실시하였고, 구매자와 판매자 간의 특수관계가 해당 물품의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신품과 재생품 보드의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조사결과를 청구법인에게 통지함.
- 다. 청구법인은 나.에 따라 처분청에 수입한 보드에 대한 부족세액을 수정신고·납부하였고, 처분청은 재생품 보드는 과세관청의 명확한 과세기준이 없었던 점을 고려하여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신품 보드(“쟁점물품”)에 대해서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미발급함.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함.

(2) 결정요지: 과세관청의 처분 취소

청구법인은 쟁점물품 수입거래를 무상에서 유상으로 전환하면서 상거래 관행을 고려하여 신품 및 재생품의 거래가격에 대한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려고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등 ‘수입자의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확인되거나 수입자가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임.

(3) 결정일

2024.01.19. (조심 2023 관 0060)

III. 조세심판사례

2. 청구법인의 과세전적부심사에 대하여 재조사 결정 후 결과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과 관련하여, 재조사 결정에 따라 종전 과세전통지가 취소되었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시 별도 과세전통지가 있었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주요내용

- 가. 청구법인은 향료 및 향료 원료 수출입 및 가공,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미국 소재 생산자가 생산한 “쟁점물품”을 미국 소재 수출자로부터 수입하면서, 쟁점물품을 ‘니코틴과 그 염’이 분류되는 HSK 제 2939.79-1000 호로 하여, 한-미 FTA에 따른 협정관세율 0%, 부가가치세율 10%로 각각 수입신고하였고, 통관지세관장은 이를 수리함.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관세법」 위반 여부에 대하여 조사한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여러 회사를 차명으로 설립한 후, 그 직원에게 수출자를 통해 쟁점물품을 수입하는 것처럼 허위 송품장을 작성하도록 지시하여 물품수입대금을 허위 송금하는 방법으로 국내 재산을 해외로 도피한 사실을 확인하여 재산국외도피죄 및 가격조작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함.
- 다. 이 후 처분청은 수입신고 4건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소신고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를 과세전통지를 함.
- 라. 청구법인은 과세전통지에 대하여 관세청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고, 관세청은 적부심사 제1차 결정서에서 수입신고 1에 대한 과세전통지는 이를 취소하고, 「관세법」 제30조 내지 제35조에 따라 과세예정 금액과 그 산정근거 및 근거조문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적시할 수 있도록 재조사 결정을 하였고, 수입신고 2~4에 대하여는 위 재조사를 참조하여 적정한 과세가격을 산정할 수 있도록 심의를 보류함.
- 마. 제 1차 결정서에 따라 처분청은 재조사 후 청구법인 대표자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타업체 수입의 쟁점물품과 동종·동질물품의 신고단가를 이 건 수입신고 1의 신고단가로 적용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가산세를 부과 · 고지(쟁점처분 1)함.

III. 조세심판사례

바. 또한 관세청은 재1차 결정서에서 심의가 보류된 수입신고 2~4에 대하여 납세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제2차 결정서에서 「관세법」 제30조 내지 제35조에 따라 과세예정 금액과 그 산정근거 및 근거조문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적시할 수 있도록 재조사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함.

사. 제2차 결정서에 따라 처분청은 재조사 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가산세를 부과·고지(쟁점처분2)함.

아.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함.

(2) 결정요지: 과세관청의 처분 일부 취소

청구법인의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에 대하여 재조사 결정을 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쟁점처분을 한 것이므로 관세법에 의해 과세전통지를 생략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함

(3) 결정일

2024.01.23. (조심 2023 관 0026)

III. 조세심판사례

3. 쟁점물품(adding of cotton)을 ‘탈지면’이 분류되는 HSK 제 3005.90-1000 호와 ‘면제의 기타 워딩제품’이 분류되는 HSK 제 5601.21-0000 호 중 어디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1) 주요내용

- 가. 청구법인은 중국으로부터 대용량으로 포장된 룰상의 탈지면 제조용 면제 워딩(“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면제의 기타 워딩제품’으로 보아 HSK 제 5601.21-0000 호(기본관세율 8%, FTA 협정관세율 0.8%~4%)로 신고하고 관세 등을 신고납부(수정신고 포함)함.
- 나. 청구법인은 처분청에 쟁점물품이 HSK 제 3005.90-1000 호(WTO 양허관세율 0%)의 ‘탈지면’으로 분류되어야 한다면서 쟁점물품에 대해 신고납부한 관세, 부가가치세, 보정이자 및 가산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을 청구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각각 거부함.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함.

(2) 결정요지: 신청인의 심판청구 기각

쟁점물품은 수입신고 당시 내과용·외과용·치과용·수의과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의료물질이 침투된 상태로 제시되지 아니하였고 소매포장도 되지 않아 제 3005 호로 분류할 수 없음.

(3) 결정일

2024.01.23. (조심 2023 관 0067)

III. 조세심판사례

4. 쟁점물을 증기나 모래의 분사기와 유사한 제트분사기로 보아 HSK 제 8424.30-9000 호로 분류할 것인지, 그 밖의 기타 기기로 보아 HSK 제 8424.89-9000 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1) 주요내용

- 가. 청구법인은 중국 수출자로부터 고압세척기를 수입하면서, HSK 제 8424.30-9000 호의 '증기 또는 모래의 분사기와 이와 유사한 기타 제트분사기'로 보아 한-중 FTA에 따른 협정관세 0%를 적용하여 각각 수입신고 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음.
- 나. 처분청은 쟁점물을 '그 밖의 기타기기'가 분류되는 HSK 제 8424.89-9000호(협정관세율 3.2~5.6%)로 보아 청구법인에 품목분류 오류에 따른 부족세액의 수정신고를 안내함.
- 다. 이에 청구법인은 쟁점물을 대하여 HSK 제8424.89-9000호로 수정신고 및 납부 후,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품목분류를 질의하였고, HSK 제8424.89-9000호에 해당된다는 회신을 받음.
- 라. 청구법인은 처분청에 쟁점물을 HSK 제8424.30-9000호의 '증기 또는 모래의 분사기와 이와 유사한 기타 제트분사기'이므로, 관세, 부가가치세, 가산세의 환급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각 거부하였음.
-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함.

(2) 결정요지: 신청인의 심판청구 기각

쟁점물을 고압 펌프의 힘을 이용해 물로 먼지나 찌든 때를 세척하기 위한 기계이므로 강력한 물 분사에 의한 수압총이나 워터제트 박피기 등과 유사한 것으로 보이나 주기능 등에 비추어 그 밖의 기기가 분류되는 HSK 제 8424.89-9000 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3) 결정일

2024.01.29. (조심 2022 관 0156)

III. 조세심판사례

5.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수입신고한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에 대하여 위 거래가격이 특수관계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아 부인하고 관세법 제 35 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

(1) 주요내용

- 가. 청구법인은 이탈리아 소재 본사인 판매자로부터 가방·신발 등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관세법」 제30조에 따라 거래가격(제3자 도매가격에 할인율 20%를 적용한 가격)으로 신고하였고, 통관지 세관장은 이를 수리함.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관세조사 결과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특수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고 보아, 「관세법」 제31조부터 제35조(제2방법부터 제6방법)에 따른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적용여부를 순차적으로 검토하여 최종적으로 제6방법에 따라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제3자 도매가격(할인율 0%)으로 결정한 후, 청구법인에게 관세 및 내국세 및 가산세 각각 경정 · 고지함,
- 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에 위 처분과 관련하여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을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각각 거부하였음.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함.

(2) 결정요지: 처분청의 부과처분 취소

청구법인의 쟁점물품 거래가격은 쟁점수출자와 특수관계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나, 처분청의 과세가격 산정 시 사용한 국내 제 3 자의 수입가격은 그 국내 제 3 자와 청구법인간의 의무, 역할 및 기능에 차이가 있어 보여 그 과세가격을 결정이 합리적이라 보기 어려움.

(3) 결정일

2024.02.01. (조심 2022 관 0127)

III. 조세심판사례

6. 쟁점물품(석탄)의 휘발성분에 대한 청구법인의 하역항 분석결과에 따라 유연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개별소비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

(1) 주요내용

가. 청구법인은 석탄을 수입하면서, 러시아 소재 국제공인검증기관이 선적지에서 쟁점물품을 검사 후 발행한 선적항 COA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쟁점물품을 휘발성분이 14% 이하인 무연탄으로 보아 HSK 제2701.11-0000호(개별소비세 비대상)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함.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하역 시 자체적으로 실시한 분석결과에서 쟁점물품의 휘발성분이 14%를 초과하는 것을 확인한 후, 쟁점물품이 유연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를 경정 · 고지함,

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 중 석탄으로 수입신고한 건에 대하여 하역항 분석결과 HSK 제2701.12-9090호(개별소비세 33원/kg)의 유연탄으로 품목분류하여 처분청에 개별소비세 등을 수정신고 및 납부하였으나, 같은 날 쟁점물품이 선적항 COA에 따라 HSK 제2701.11-0000호의 ‘무연탄’으로 분류되어야 한다며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가산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거부함.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후 심판청구를 제기함.

(2) 결정요지: 신청인의 심판청구 기각

개별소비세 등은 수입신고 당시의 성상에 따라 부과되는 것으로 국제공인석탄시험기관으로 인정받은 청구법인의 하역항 분석결과에 따라 유연탄(HSK 제 2701.12-9090 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 처분에 잘못이 없음.

(3) 결정일

2024.02.02. (조심 2023 관 0106)

III. 조세심판사례

7. 쟁점물품의 외면에 사용된 목재가 HS 제 44 류 소호주 제 2 호 내지 관세율표 제 44 류 국내주 제 1 호의 열대산 목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HSK 제 4412.31-4011 호 등으로 분류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1) 주요내용

- 가. 합판은 한쪽 외면 ply(겹 또는 층)의 수종(樹種)에 따라 품목번호가 결정되는데, 청구법인은 인도네시아로부터 두께가 6mm 이상 10mm 미만이고 한쪽 외면 ply의 수종이 메란티 다운 르바르(쟁점 목재)인 합판(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쟁점목재를 기타의 열대산 목재로 보아 쟁점물품을 HSK 제4412.31-4019호 및 제4412.31-4029호로 분류하고, 한-아세안 FTA에 따른 협정관세율 5%를 적용하여 수입신고를 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함.
- 나. 처분청은 쟁점물품에 대해 사후분석을 실시한 결과, 쟁점목재가 관세율표 제44류 국내주 제1호에서 정한 특정 열대산 목재명 88개에 해당한다고 보아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HSK 제4412.31-4011호 및 제4412.31-4021호(기본관세율 8%, 한-아세안 FTA 협정관세율 10.4%)로 변경하고, 「관세법」 세율 적용 우선순위에 따라 쟁점물품에 기본관세율 8%를 적용하여, 청구법인에게 관세,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를 경정·고지함.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후 심판청구를 제기함.

(2) 결정요지: 신청인의 심판청구 기각

열대산 목재와 관련한 책자, 분류체계 등에 비추어 메란티 다운 르바르는 다크 레드 메란티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고, 수출국 관세당국 역시 메란티 다운 르바르를 쇼레아속으로 취급할 경우 다크 레드 메란티로 분류할 수 있다고 회신한 반면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에 사용된 목재가 어떤 수종의 목재인지에 대하여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3) 결정일

2024.02.02. (조심 2023 관 0121)

IV. 관세 및 FTA 관련 동향

1. 2024년 관세행정, 이렇게 달라집니다.

- 관세청, '2024년 달라지는 관세행정' 관세청 누리집에 공개
- 수출입 기업 지원, 납세자 편의 증진 등 무역원활화 및 국민권익 보호

(1) 수출입 기업 등 지원을 통한 원활한 무역환경 조성

가. 납세자본인에 관한 과세정보의 전송 요구권 마련('24. 7월 시행)

납세자(기업)가 본인의 과세정보를 관세사 등에게 전송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과세정보 전송 요구권'을 신설*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높이고, 기업의 무역데이터 활용률을 제고해 기업경쟁력 강화에 기여

* 기존 과세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대상은 민간기업 제외



나. 국제항 내 국제무역선에 의한 보세운송 특례절차 도입('24. 1월 시행)

국제항 내(예: 부산항 신항→북항)에서 환적물품과 수출신고 수리물품을 국제무역선*으로 보세운송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환적물품 유치를 지원하고 수출경쟁력 강화에 기여함.

* 기존: 국내운송수단에 의해서만 보세운송 가능



다. 수출입물품 검사수수료 징수 폐지('24. 1월 시행)

세관직원이 세관검사장이 아닌 장소에서 물품을 검사하는 경우 신고인에게 부과되는 수출입물품 검사 수수료*를 폐지하여 보세창고를 운영하고 있는 수출입기업의 수수료 부담을 완화함.

* 기본수수료(시간당 2천원) + 실비상당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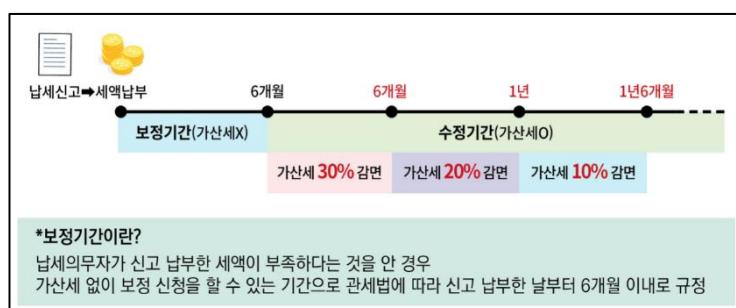


IV. 관세 및 FTA 관련 동향**(2) 납세자 등 국민의 권리보호 및 편의증진 도모**

가. 수정신고 시 관세 과소신고 가산세 감면율 확대('24. 1월 시행)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관세액(미납세액)과 신고납부세액이 부족한 세액(부족세액)에 대해 납세자가 수정신고할 경우, 보정기간* 경과 후 ①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가산세 감면율을 기존 20%에서 30%로, ② 6개월 초과 1년 이하 이내에 수정신고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가산세 감면율을 기존 10%에서 20%로 상향 조정하여 납세자의 부담을 경감함.

* 신고납부한 날부터 6개월 이내



나. 물품검사 손실보상 대상 확대('24. 3월 시행)

세관의 물품검사로 물품에 손실이 발생할 경우 손실보상의 대상을 검사대상 물품뿐만 아니라 포장용기, 운송수단 등의 손실까지 확대하여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함



다. 여행자 휴대품 별도 면세범위 향수의 면세한도 상향('24. 1월 시행)

해외여행자 휴대품 중 별도 면세범위인 향수의 면세 한도를 '60ml(밀리리터)'에서 '100ml(밀리리터)'로 상향 조정하여 국민 편의를 증진하고 면세산업 활성화를 지원함.



IV. 관세 및 FTA 관련 동향**(3) 공정하고 투명한 제도 구축을 통한 대외 경제질서 확립**

- 가. 유니패스 전담 운영기관 설립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24. 7월 시행)
현행 관세정보시스템(유니패스)의 운영을 민간위탁(지정사업자 제도) 방식에서 공공기관 운영방식으로 전환하여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공공성과 책임성 및 전문성을 제고함.
※ 공공기관으로 지정 시 국정감사 수감·경영공시 등 국회와 국민의 관리·감독을 강화
- 나. 신고내용과 다른 운송수단으로 보세운송 시 과태료 부과 ('24.1월 시행)
보세구역 출발 전 신고한 운송수단과 다른 운송수단으로 보세운송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운송 중 물품을 바꿔치기 하는 등 통관질서를 교란하는 부정행위를 차단하여 보세화물관리의 안정성을 강화하고, 허가 받지 않은 물품의 밀반출입 위험을 제거하여 국민건강과 사회안전을 제고함.

IV. 관세 및 FTA 관련 동향**2.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공급망 협정 2월 24일 일부국 발효**

산업통상자원부는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 (IPEF) 공급망 협정(필라2)이 2월 24일 미국, 일본 등 일부 국가에 발효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5개국 이상이 비준서를 기탁한 후 30일 이후 협정이 발효된다는 협정 규정에 따른 것으로, 현재 일본('23.11.29), 미국 (1.5), 싱가포르(1.12), 피지(1.24), 인도 (1.25)가 비준서를 기탁했다.

< IPEF 개요>

- 명칭: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for Prosperity)
- 참여국: 한국, 미국, 일본, 싱가포르, 호주, 뉴질랜드, 태국, 베트남, 브루나이,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인도, 피지 등 인태지역 14개국
- 분야: 필라1(무역), 필라2(공급망), 필라3(청정경제), 필라4(공정경제)

IPEF 공급망 협정은 한국, 미국, 일본 등 참여국들의 강한 의지로 2022년 12월 협상 시작 후 11월 서명까지 마쳤다. 또한, 세계 최초의 공급망 분야 다자간 국제 협정으로서, 공급망 위기 시 즉시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위기대응 네트워크」를 운영하는 한편, 공급망 복원력 증진을 위한 투자확대, 물류개선, 공동 연구개발(R&D) 등 중장기적 협력을 증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보다 효율적인 공급망 위기 대응과 대체 공급선 확보 및 공급망 다각화를 가능케하여 우리 기업의 안정적인 영업환경 구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IPEF 공급망 협정이 5개국에 대해 발효됨에 따라, 핵심품목 선정 등 이행기구 운영 등을 위한 이행 준비 절차도 개시된다.

한국의 경우, 현재 정부 내 심사 등 IPEF 공급망 협정 비준을 위한 국내 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며, 국내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비준서를 기탁할 예정이고, 기탁일로부터 30일 후 발효될 예정이다.

IV. 관세 및 FTA 관련 동향

3. 식약처, 새로운 궤양성 대장염 치료제 허가

- 한국릴리(유)(社)가 수입하는 '옴보주(미리키주맙, 유전자재조합)' 허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궤양성 대장염* 치료에 사용하는 신약 '옴보주(미리키주맙, 유전자재조합)'를 2월 7일 허가했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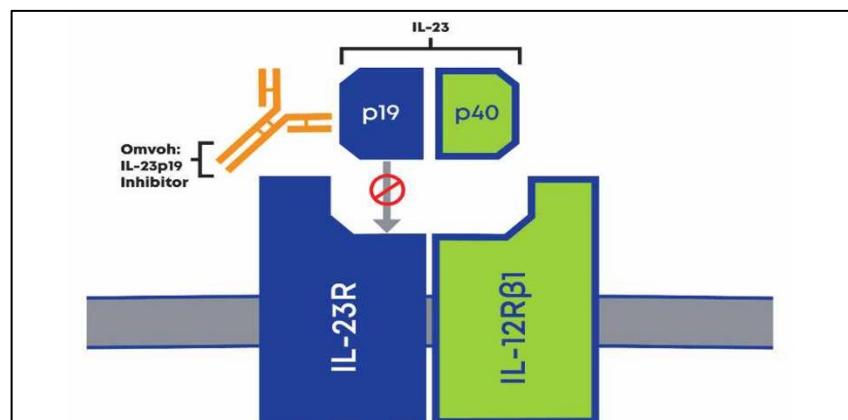
* 궤양성 대장염: 대장에 염증 또는 궤양이 생기는 만성 재발성 질환

'옴보주20밀리그램/밀리리터(미리키주맙, 유전자재조합)'는 인터루킨(IL)-23의 p19 소단위(subunits)에 결합하는 단클론항체 의약품으로, 염증반응을 일으키는 인터루킨 수용체 하위 신호전달을 억제하여 궤양성 대장염 환자에게 새로운 치료 기회*를 제공한다.

* 옴보주 효능·효과: 보편적인 치료제(코르티코스테로이드 또는 면역억제제 등) 또는 생물학적 제제에 적절히 반응하지 않거나, 반응이 소실되거나 또는 내약성이 없는 성인의 중등도에서 중증의 활동성 궤양성 대장염의 치료

미리키주맙은 궤양성 대장염을 포함한 여러 면역 매개 및 만성 염증성 질환의 발병에 중심 역할을 하는 인터루킨(IL)-23에 결합하여 장내 세균, 바이러스 감염 저항성을 유지하면서 염증의 임상적 개선을 돋는다.

<옴보주 작용기전>



(출처: 한국릴리(유) 자료 인용)

IV. 관세 및 FTA 관련 동향**4.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조치 2개월 연장**

- 2024.4.30. 휘발유 △25%, 경유·액화석유가스(LPG)부탄 △37% 인하 유지
-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정부는 '24.2.29.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현행 휘발유 △25%, 경유·액화석유가스(LPG)부탄 △37%) 조치를 '24.4.30.까지 2개월 추가 연장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24.2.19(월)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한다.

<유류세 인하기간 및 인하폭>

유종	인하 전 탄력세율	'21.11.12. ~ '22.4.30.	'22.5.1. ~ 6.30.	'22.7.1. ~ 12.31.
		△30%	△37%	휘발유△25%, LPG △37%
휘발유	820	573(△247)	516(△304)	615(△205)
경유	581	407(△174)	369(△212)	369(△212)
LPG, 부탄	203	142(△61)	130(△73)	130(△73)

개정안은 중동정세 불안 등에 따라 국내외 유류 가격 불확실성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 이번 개정을 통해 인하 전 세율 대비 휘발유 △205원/리터(ℓ), 경유 △212원/리터(ℓ), 액화석유가스(LPG)부탄 △73원/리터(ℓ)의 가격 인하 효과가 향후 2개월간 유지되어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경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2.19~20.), 관계부처 협의 및 국무회의(2.27. 예정) 등을 거쳐 '24.3.1. 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IV. 관세 및 FTA 관련 동향**5. 제33차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시행**

- 대(對) 러시아, 벨라루스 상황허가 대상품목 1,159개로 확대

산업통상자원부는 2.24일자로 대(對)러시아/벨라루스 수출통제 품목을 확대하는 「제33차 전략물자수출입고시」 개정안을 시행한다.

산업부는 국제사회의 대(對)러시아/벨라루스 수출통제 공조를 위해 상황허가* 대상을 확대하는 고시 개정안을 마련, '23.12.26일(화) 행정예고 하였으며,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최종 확정하였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건설중장비, 이차전지, 공작기계, 항공기부품 등 군용 전용(轉用) 가능성이 높은 682개 품목이 상황허가 대상으로 추가되며, 이에 따라 대(對)러시아/벨라루스 상황 허가 대상 품목은 총 1,159개로 확대된다.

* 상황허가: 비(非)전략물자 중 군용 전용 가능성이 높은 물품은 정부 허가 필요

<상황허가 대상품목 추가>

개정 전 798개	개정 후 1,159개
전자, 조선, 산업·건설기계, 석유·가스 정제장비 등	철구조물, 항공기부품, 공작기계 건설중장비, 운반하역기계 차량용 배터리, 이차전지 등

상황허가 대상으로 추가되는 품목은 고시가 시행되는 2.24일(토)부터는 원칙적으로 수출이 금지되며, ①기계약분 수출(2.23일까지 수출계약 체결 건), ②자회사향(向) 수출 등 사안별 심사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에 한해 상황허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허가를 발급받은 건만 수출이 가능하다.

아울러, 금번 고시 개정안에는 산업용 포괄허가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인도적 목적의 해외긴급구호 품목의 허가면제를 확대하는 등의 제도 개선사항도 반영되었다.

산업부는 고시 개정에 따른 수출기업의 원활한 제도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전략물자관리원 내 설치된 「수출통제 현안 데스크(02-6000-6496~9)」를 통해 제도 및 품목 관련 문의사항에 대해 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상황허가 품목이 제3국을 우회하여 러시아/벨라루스로 유입되지 않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우회수출 단속 및 집행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IV. 관세 및 FTA 관련 동향**6. 무역위원회, 이집트산 백시멘트 덤핑 판정**

- 향후 5년간 60.83% 덤핑방지관세 부과 건의
- 폐렴 백신 및 전기 프라이팬 특허권 침해 판정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2024년 2월 22일 열린 제445차 무역위원회 회의에서 이집트산 백시멘트의 덤핑수입으로 국내산업이 피해를 받고 있다고 최종 판정하고, 이집트산 백시멘트에 대하여 향후 5년간 60.83%의 덤핑방지 관세를 부과할 것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하였다.

인테리어용 마감재의 원료로 주로 사용되는 이집트산 백시멘트에 대해서는 2023.11.15부터 잠정덤핑방지관세 72.23%가 부과 중에 있으며, 기획재정부장관이 2024년 4월말까지 최종 덤핑방지관세율과 부과 기간 등을 확정할 예정이다.

또한, 폐렴 백신과 전기 프라이팬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에 대해서 무역위원회는 피신청기업이 특허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정하였다.

미국 제약사 와이어쓰 엘엘씨가 신청한 '폐렴 백신 특허권 침해' 여부 조사 결과 무역위원회는 국내기업이 폐렴구균 백신용 원액을 제조하여 수출하는 행위는 특허권 침해로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다. 이에 따라 무역위원회는 해당 기업에 침해물품의 제조·수출 중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등을 명령하고 1,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하였다.

디앤더블유가 신청한 '전기프라이팬 특허권 침해' 여부 조사 결과 무역위원회는 전기 프라이팬을 중국에서 수입하거나 국내에서 판매한 기업의 행위는 특허권 침해로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다. 특허권 침해기업에 대해 무역위원회는 침해물품 수입·판매 중지, 재고 폐기처분,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등을 명령하고, 1,118만원 ~ 2,874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하였다.

이외에도 휴롬이 국내기업 1곳을 대상으로 신청한 착즙기 특허권 침해 여부와 오스테오시스가 국내기업 1곳을 대상으로 신청한 체성분 분석장치 영업비밀 침해 여부에 대한 조사를 개시하기로 하였다.

무역위원회 상임위원은 "최근 기업간 특허분쟁이 심화됨에 따라 특허권 침해 조사 신청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고 하면서 "앞으로 무역위원회는 산업기술 보호와 공정무역질서 확립을 위한 파수꾼으로서 그 역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IV. 관세 및 FTA 관련 동향**7. 의료기기 수입신고, 더욱 간편해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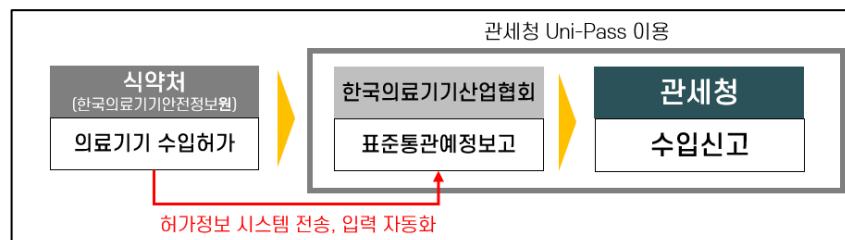
- 관세청, 식약처와 협업으로 의료기기 수입허가 정보 13종 입력 자동화
- 연간 약 33,167시간의 업무시간 및 약 3억 원의 인건비 절감 효과 기대

관세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기를 수입하면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사전 승인 절차인 표준통관예정보고*가 2월 29일부터 간편 해진다고 밝혔다.

* 표준통관예정보고: 의료기기·의약품 등의 무자격·무허가 수입으로 인한 국민건강 위험물품의 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수입자가 수입신고 전에 미리 관련 협회로부터 승인받는 절차

기존에는 민원인이 관세청 통관단일창구(Uni-Pass)에서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작성할 때 식약처 등으로부터 사전에 승인받은 허가정보를 일일이 직접 입력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의료기기 수입신고 간편화 개념도>



관세청은 이러한 불편 사항을 해소하고자 식약처로부터 사전 허가정보 13종을 공유 받아 관세청 Uni-Pass에 자동 입력되도록 개선했다.

<자동입력 허가정보(13종)>

- 수입업 허가정보(2종): 수입업 허가번호, 수입업자 허가구분
- 품목 허가정보(11종): 의료기기 분류번호, 분류등급코드, 품목한글명, 품목영문명, 모델명, 제조원·제조의뢰자 상호, 제조원·제조의뢰자 주소, 제조원·제조의뢰자 국가 한글명, 제조원·제조의뢰자 국가 영문명, 품목허가(신고)번호, 품목허가(신고)일자

이번 제도개선으로 의료기기 수입자의 약 33,167시간의 업무시간과 약 3억 2,703만 원의 인건비가 연간 절감*될 것으로 보이며, 수기 입력 시 발생하는 오류를 방지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 의료기기 수입신고 건수('23 기준 19.9만건) × 10분(건당 입력시간) × 9,860원('24 최저시급)